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June 24,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디지털세 필라 1 Amount B 의 영향 평가

2024 년 2 월 19 일 OECD/G20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포괄적 이행체계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는 마케팅 및 유통 활동에 대한 정상가격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적용을 단순화·간소화하기 위하여 Amount B 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각 관할국(jurisdiction)이 Amount B 를 2025 년 1 월부터 납세자 세이프하버 혹은 의무 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KPMG 는 기업들의 Amount B 의 잠재적인 영향 및 대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mount B 의 영향

잠재적인 Amount B 영향 평가의 첫 번째 단계는 표준 가격 산정표(pricing matrix)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표준 가격 산정표는 상품의 분류(산업군)과 기업의 재무비율(매출대비 자산·비용의 비율)에 따라 상이하며, 1.5%에서 5.5%의 영업이익률 범위 내에서 Amount B 기준

영업이익률을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현재 이전 가격 정책이나 기존 영업이익률이 표준 가격 산정표 내 예상되는 위치와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단계로, 소수의 시범 관할국에서 Amount B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KPMG는 해당 모델링을 통해 기업이 Amount B 시행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및 잠재적으로는 거래)별 상이한 결과:** Amount B는 개별 법인 혹은 법인이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각 거래에 적용 가능하여 Amount B 기준 영업이익률은 법인 혹은 거래마다 상이합니다. 따라서, 지역적 또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이전가격 정책을 모든 판매법인에 적용하는 기업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 **수행기능 구분:** Amount B는 판매 기능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에 따라 판매활동은 제조 활동과 같이 Amount B에서 배제된 다른 기능으로부터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운영 자산 비중 검토(하단 참조) 절차로 복잡해진 절차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판매법인이 다수의 특수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복잡성이 가중됩니다.
- **운영 자산 비중:** 기업은 표준 가격 산정표에 따라 판매법인의 매출대비 운영 자산 비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영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Amount B 기준 영업이익률이 높게 산정되므로 기업은 판매법인의 운영 자산을 검토하여 기준 영업이익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매출액 대비 운영 비용 비중 제한:** Amount B는 매출액 대비 운영 비용 비중이 3% 이상 20~30% 미만인 법인(상한선은 각 관할국에서 결정)으로 한정합니다. 운영 비용에 pass-through 비용은 제외되지만 이러한 비용들에 대하여 추가 지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제한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예: 광고 및 프로모션 비용)이 상당한 판매법인은 잠재적으로 Amount B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운영 비용 교차 검토(Operating expense cross-check, "OECC") 및 데이터 가용성 메커니즘(개발도상국 상향 조정):** 운영 비용 교차 검토 및 데이터 가용성 메커니즘이 적용될 관할국 목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업들은 OECC가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데이터 가용성 메커니즘의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 **적용 가능한 회계 기준:** Amount B는 대상 법인이 소재한 관할국의 법정 회계 기준 또는 관할국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기타 회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즉,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한국 다국적 기업은 한국 회계기준이 허용되는 관할국 밖에서는 한국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Amount B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회계 기준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Amount B의 영향을 추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Amount B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기업마다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몇몇 Amount B 시범 관할국에서 잠재적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합니다. 비록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기업들은 Amount B 준수 전략을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한 거래 당사자의 관할국에서는 Amount B가 세이프하버 혹은 의무규정으로 시행되지만 상대 관할국에서는 시행되지 않는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 수립도 포함됩니다.

운영 위험

Amount B의 잠재적 영향을 식별한 기업들은 판매법인의 기준 영업이익률을 설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며 예상되는 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표 영업이익률 간 좁은 편차:** Amount B 기준 영업이익률 간 편차는 1% 정도입니다. 만약 Amount B 표준 가격 산정표에 따라 기준 영업이익률이 달라지게 되면 기업은 달라진 목표 영업이익률 달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 비용 교차 검토로 1% 편차가 허용될지 불분명하며, 운영 비용 교차 검토에 의해 결정된 영업이익률을 달성해야 하는 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가격 정책 운영에 있어 많은 기업들에게 위험을 야기하며, 기업들이 더욱 빈번하고, 큰 규모로 이전가격 조정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관할국에서 연말 이전 가격 조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확실한 영업이익률:** Amount B 기준 영업이익률은 직전 년도를 기반으로 설정됩니다. 예를 들면 2025년도의 경우 2022년도에서 2024년도 사이의 판매법인의 기능적 특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2024년도 재무자료가 2025년도 중에 확정되어 Amount B에 의해 결정된 목표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이전가격 정책 운영 방안을 연초에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초에 재무자료 가용이 가능하여도, 운영 비용 교차 검토는 당해 년도 운영 비용 기준으로 함에 따라 기업은 운영 비용 교차 검토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당해 년도 매출 대비 운영 비용 비중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현지 법정 회계 기준 적용:** 기업은 특별히 허용되지 않는 한, 현지 법정 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자료를 기반으로 Amount B를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지 재무자료는 현지 일정에 맞춰 작성되므로 재무자료 가용 가능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효율적인 자료 파악 및 관리절차:** Amount B 적용에 있어 기업은 판매법인의 가격을 설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과거 자료를 포함한 다수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거래별 자료를 파악 및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Amount B 는 통상적인 마케팅 및 유통 활동의 가격 설정을 단순화·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관할국은 통상적인 판매 활동의 가격책정을 둘러싼 세무 당국 간의 분쟁을 줄이는 가운데 기업들은 2025 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이전 가격 프레임워크의 적용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업은 Pilar 2 혹은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과의 통합 방안과 같이 실질적인 Amount B 운영 방안을 고려하여 시너지 창출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4 서 0259 (2024.04.22)

제목: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이 단독 등록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할 법적·경제적 권리가 인정되고, 청구법인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이전하였으므로 그 사용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화학섬유류 제조·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8~2012 사업연도에 국내외 계열사(이하 "쟁점계열사들")로부터 "a" 및 "b" 상호와 로고(이하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중국에 소재한 해외 현지법인(이하 "c")으로부터 2010~2012 사업연도에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c 매출액의 3%)를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 탈루·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3~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6~2011년 농어촌특별세 000원을 경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2014.1.20., 2018.2.22.)를 거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21.2.17. 1심 패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임
- 청구법인은 2015~2018 사업연도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이하 "쟁점사용료")와 기술로열티(이하 "쟁점기술료")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여 쟁점사용료와 쟁점기술료를 과세표준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21.3.30., 2022.3.23., 2023.3.31. 당초 신고한 쟁점사용료와 쟁점기술료를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환급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4., 2022.5.27., 2023.6.9. 이를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8., 2022.6.27., 2023.9.5.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쟁점

- ① 청구법인의 상표권을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제조기술을 중국현지법인에 이전하고 기술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술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청구법인은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쟁점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 및 쟁점계열사들이 상표가치 제고를 위한 비용 지급을 통하여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일반적으로 쟁점사용료를 수취해야 한다는 논거는 부당함 - 쟁점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쟁점계열사들의 초과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뿐더러, 산정된 쟁점사용료 시가는 법인세법, 국조법상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c는 위험과 효익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단순 유통업자로 정의되며, 조세심판원은 단순 유통업자인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상표 사용료 수취여부에 대해 다툼 심판청구(조심 2015서1184, 2017.4.20.)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p>청구법인이 쟁점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단독 상표권자로 등록되어 있고,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국내 계열사들 전체 지출한 비용 대비 압도적이고, 계열사들이 각자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것은 각 계열사의 상품판매 매출 증대를 위한 것이지 상표가치를 제고했다고 볼 수 없음 - 해외계열사들은 청구법인과 거래 시 매출액의 일정률을 이익으로 보상받는 구조로서 청구법인 소유 상표권의 브랜드 파워, 신뢰도 향상에 따라 효익을 얻게 됨 - 국내·외 법인 상표사용료 거래사례, 청구법인의 내부 검토자료, 사례 등을 토대로 상표권 사용료 시가를 산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조사청이 채택한 사용료 산정방법은 적법함 - 해외 계열사들은 자신의 영업에 해당 상표를 이용함으로써 타사 제품 대비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해외 자회사는 시장조사, 자체적인 광고·선전, 거래처 영업 등 해외 시장개척을 위

	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단순한 유통업자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c 으로부터 별도의 기술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약서에 따른 노하우를 제공받은 것이 아닌 주재원 파견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오히려 주재원들이 현지 파견으로 시행착오를 통해 자체적으로 학습할 기회를 얻은 것임 - 청구법인의 쟁점기술료 회수방안 검토는 기술사용대가 회수 목적이 아닌 현지 공장의 투자비용 회수 목적에서 검토된 것임 	청구법인이 쟁점기술료를 수취하는 것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답조사 시 ○○○연구개발팀 팀장은 팀의 연구개발 결과가 c의 공장 설립 및 가동정상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기술이전계약서 초안에서 c에 기술정보를 제공할 것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음 - 청구법인이 c에 대한 기술정보 등의 이전이 로열티 지급 대상이 된다고 검토해 온 점을 볼 때, c에 제공한 것은 단순한 인적 용역이 아니라 로열티 지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 이전에 해당됨 - 기술이전계약서 초안 외 내부 검토 문건을 검토한바, 공장 투자비용 회수 목적이 아닌 기술료 수취 목적임을 확인함

4) 판단

-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을 국내외에서 단독으로 등록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계열사들로부터 관련 사용료를 요구할 법적·경제적 권리가 인정되는 점, 국외 계열사는 청구법인과 거래 시 매출액의 일정률을 이익으로 보상받는 구조로서 청구법인 소유 상표권의 브랜드 파워나 신뢰도 향상에 따라 매출액 및 순이익 증가로 효익을 얻게 되는 점, 청구법인은 상표권 사용료를 반영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기술이전계약서(안)에 따르면 특허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c가 청구법인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도 여러 차례 c로부터 기술료 회수방안을 검토한 사실과 중국 정부의 엄격한 외화반출 관리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03 관세

EU 집행위원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계획 사전 공개

1. EU 상계관세 부과 계획

(1) 개요

EU 집행위가 지난 6월 12일 중국산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s) 대상 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과 및 상계관세 부과 계획을 사전 공개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4일 집행위는 反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해당 조사는 늦어도 13개월(24.11.4일) 내 종결 예정입니다. 사전 계획에 따르면 집행위는 중국의 전기차 가치사슬이 불공정한 보조금 지원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 위험이 되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2024년 7월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 생산업체 대상 잠정 상계관세를 도입 예정입니다.

(2) 사전 계획 세부 내용

집행위원회의 사전 계획 공개에 따르면 세부적인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 ① 反보조금 조사 표본으로 지정된 3사(BYD17.4%, Geely20%, SAIC38.1%) 대상으로는 기업별 보조금(Subsidization)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존 관세율 10%에 더해 최종 BYD 27.4%, Geely 30%, SAIC 48.1%
- ② 조사에 협력했으나 표본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국 내 다른 전기차 생산업체*대상으로는 21% 가중평균 상계관세를 적용해 최종 31%
 - 해당기업은 BMW, Chery, Dongfeng, GWM, Leapmotor, Tesla, NIO 등이며, Tesla는 집행위에 관세 인하를 위한 개별 조사(individual examination)를 요청한 상황
- ③ 이외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 대상으로는 38.1% 상계관세를 적용해 최종 48.1%

- 잠정 상계관세는 기존 수입 관세 10%에 더해 추가로 부과되지만, 실제 징수는 상계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될 시 시행 예정

- 확정 상계관세로의 전환 여부는 잠정 상계관세 부과 후 4개월 이내 EU이사회에서 가중 다수결 투표*로 결정

* 27개 회원국의 55% 이상(최소 15개국),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 시 가결

(3) 절차

순번	절차	개시일 및 집행기간	상세 내용
1	조사 개시	23.1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개시일로부터 13개월(24.11.4일) 내 조사 종결 예정
2	사전 조사 계획 발표	24.0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6.12일 집행위 발표 이후, 조사 표본으로 지정된 3사(BYD, Geely, SAIC)는 집행위가 사전 공개한 잠정 상계관세의 계산 정확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가능
3	잠정 상계관세 조치 발표 및 시행	24.07.04	<ul style="list-style-type: none">잠정 상계관세 및 관련 근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긴 규정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며, 상계관세 조치는 관보 게재 다음 날 발효
4	확정 상계관세 조치 발표 및 시행	24.1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잠정 상계관세 부과 후 4개월 이내에 反보조금 최종 결과 발표 및 확정 상계관세로의 전환 여부 결정 예정
5	확정 상계관세 부과	5년간 시행 + 소급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확정 상계관세로의 전환 여부는 EU 이사회를 통해 결정됨.확정 관세 전환 시, 이해당사자에게 서면 공개될 예정이며 조치는 5년간 시행 이후에 소급하여 징수 예정

2. 주요국 및 자동차 업계 반응

(1) 주요국 반응

중국은 EU의 이번 조치를 보호무역주의라 비판하며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독일과 헝가리, 스웨덴은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관계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며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EU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으로부터 투자유치 기회라 여겨 찬성하는 등 역내 회원국 간에도 다음과 같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中 상무부</u>, 중국 산업계 신청에 따라 EU 유제품 反보조금 조사 및 특정 EU 돼지고기 제품 반덤핑 조사 및 소송 가능성 시사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독일 정부</u>, EU 집행위 사전 조사 계획 발표 직후 “집행위의 징벌적 관세 (punitive tariffs)가 독일 기업과 그들의 상위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 등 부정적인 입장 표명 및 EU와 중국 간 협상 촉구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헝가리 정부</u>, 징벌적 관세(punitive tariffs)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프랑스 정부</u>, 집행위의 조치를 환영하며, <u>전기차 외에도 다른 산업에서 중국산 과잉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표</u>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스페인 정부</u>, 유럽 자동차와 스페인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적이고 최선의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u>금번 집행위의 제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 표명</u>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노르웨이 정부</u>, 금번 조치로 인해 자국 내 중국의 여러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u>EU의 결정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u>

(2) 자동차 산업계 반응

[중국 브랜드]

중국 자동차 브랜드로는 BYD, Nio, Chery, 스텔란티스 등이 있으며 중국 전기차 제조기업은 집행위의 잠정 상계관세 발표 이전부터 유럽 내 생산시설 구축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① Chery는 24년 4월 스페인 EV 모터스와 합작투자자 카탈루냐 지역에서 첫 번째 유럽 제조공장 설립 발표하였으며 24년 말 생산 시작 예정
- ② BYD는 헝가리에 유럽 첫 번째 전기차 생산기지 건설 계획 발표하였으며, 유럽 시장을 위한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25년 말까지 생산 예정(연간 20만 대)
- ③ SAIC MOTOR(상하이 자동차)는 24년 5월에 25년까지 유럽 내 두 번째 조립공장 건설 계획 발표

[비중국 브랜드]

중국에서 제조해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비중국 브랜드로 볼보, BMW, 테슬라 등이 있으며, 독일계 브랜드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중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중입니다.

- ① Volvo는 EX30과 EX90 모델 생산을 벨기에로 이전하는 것 외에도 영국으로 수출하는 일부 볼보 모델의 조립도 벨기에로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
- ② BMW는 중국에서 만든 BMW의 순수 전기차 Mini가 38.1% 잠정 상계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으로, 금번 조치로 인해 자사의 중장기 자동차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
- ③ Tesla는 모델3의 경우 모두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금번 조치로 향후 21% 상계관세 적용 예정이나 관세 인하를 위해 집행위에 개별 조사를 신청함

3. EU 역내 전기차 시장 동향

(1)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빠른 증가세

- **EU 역내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22년 28%, '23년에는 37% 증가하였으며('23년 약 150만 대 판매), 전기차 시장점유율 역시 '22년 13.9%에서 '23년 15.7%까지 증가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3년 EU 역내 전기차 최다 판매 모델은 테슬라 모델Y이며, '23년 유럽 전기차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Tesla(17.6%), 폭스바겐(9.9%), BMW(6.4%), 메르세데스-벤츠(5.1%), 아우디(5%), MG(5%) 순입니다.

(2)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 또한 증가세

- '24년 기준 지난 4년간 중국 브랜드의 유럽 내 전기차 판매비중과 중국에서 생산 후 유럽으로 수입되는 유럽·미국 브랜드의 비중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최근 중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주요 서구 브랜드는 테슬라와 르노의 자회사인 다치아(Dacia)로 '23년 유럽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량 중 테슬라가 28%를 차지했으며, 다치아의 스프링(Spring)은 20%를 차지하였습니다.

(3) '24년 1월~4월 기준, 서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등록건수 전년동기대비 23% 증가

- '24년 4월까지 영국을 포함한 서유럽에서 총 11만 9,300대의 중국산 전기차가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체 수입 전기차의 20%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 구체적으로 테슬라, 폭스바겐, 혼다 등 중국에서 생산된 서양 및 일본 브랜드가 2024년 첫 4개월 동안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의 54%를 차지하였으며 MG와 BYD 등 중국 브랜드가 나머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였습니다.

[KPMG 의견]

EU 전역에서는 집행위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 시행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의 EU역내 수입 물량 감소가 예상되며 연쇄적으로 EU산 전기차 생산 증가 및 전반적인 전기차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에 따라 EU 내 공장 설립 및 생산을 추진하는 등 역내산 충족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